

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211
------	------

2017. 11. 28.
기 획 경 제 위 원 회

I 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년 11월 1일, 맹진영의원의외 11명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6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】

-제10차 기획경제위원회(2017.11.28.)상정, 제안설명,
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II . 제안설명의 요지(맹진영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립대학교는 입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반값 등록금 시행에 이어 2018년부터 입학금과 전형료를 폐지하기로

함. 이에 따라 시립대의 장학금 중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금을 지원해주는 “시민장학금”이 폐지될 예정으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시민장학금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(안 제2조, 제3조, 제5조)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가. 조례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서울시립대학교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입학 전형료를 무료화함에 따라, 학부 신입생들에게 입학금을 지원하던 “시민장학금”이 폐지될 예정으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시립대 입학금 무료화 경위

- 서울시립대학교(이하 “시립대”)는 2017년 7월 교육부의 ‘입학 전형료 인하계획’ 통보에 따라 입학전형료와 입학금의 인하 방안을 논의하였으며, 관련보직자 회의를 통해 입학전형료와 입학금 전액 폐지를 결정하였음.

- 이는 시립대가 반값등록금 시행에 이어, 선도적으로 입학금과 전형료를 폐지함으로써 수험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립대학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.
- 「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제3조¹⁾에 따르면, 학교는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어, 시립대의 입학금 폐지정책을 시행함에 별도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- 그러나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의 경우 내년초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사항으로, 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교무위원회를 통해 폐지가 확정된 입학전형료와는 달리, 폐지를 위해 거쳐야 할 심의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임.
- 현재 시립대 학부 신입생의 입학금은 9만 2천원으로, 2018년도 입학금의 예상 총수입은 1억 8천8백만원(예상 입학정원 2044명)이며, 시립대는 입학금 및 전형료 무료화 추진에 따라 서울시(이하 “시”)로부터 연간 10억원을 추가 지원받기로함.
- 시는 2018년 “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” 항목으로 총 572억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, 시립대는 대학회계 내 입학금·전형료

1) 「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제3조(등록금의 면제·감액)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.

1.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.

무료화와 관련하여 “대학입시관리”사업(10억 2천 8백만원)을 신규편성하였음.

다. 시민장학금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

- 시립대는 2017년, 15,115명의 학생에게 총 148억 7,150만원의 교내·외 장학금을 지원하였음.
- 교내 장학금은 성적우수, 경제지원, 능력개발, 국제교류, 특정장학, 연구근로봉사장학으로 나누어지며, 이 중 시민장학금은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해 선발하는 장학인 ‘특정장학’의 한 종류임.

〈서울시립대 장학금 인원 및 지급액〉

(‘17.10.31 기준, 단위 : 명, 천원)

구 분		2017학년도		최근 3년 지급평균	
		인원	금액	인원	금액
총 계		15,115	14,871,507	17,510	17,083,214
대 학	교내	4,553	3,311,842	5,991	4,397,765
	교외	8,185	7,435,419	8,963	8,173,337
	합계	12,738	10,747,261	14,954	12,571,102
대 학 원	교내	2,088	3,231,606	2,218	3,330,486
	교외	289	892,640	338	1,181,626
	합계	2,377	4,124,246	2,556	4,512,112

- 시민장학금은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,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에게 입학금을 지원하는 장학금 으
로, 2017년 기준 정원내 신입생의 14.5%인 245명에게 총
2,254만원을 지급하였음.

〈최근 5년간 신입생 수 및 시민장학금 지급현황〉

(‘17.10.31 기준, 단위 : 명, 천원)

연도	신입생 인원 (정원내)	시민장학	
		인원	장학금
합 계	8,689	1,214	111,636
2013	1,771	345	31,740
2014	1,744	187	17,152
2015	1,768	219	20,148
2016	1,718	218	20,056
2017	1,688	245	22,540

- 시립대의 입학금 폐지에 따라 서울시민인 신입생들에게 지급되던 시
민장학금 자체가 불필요해진 상황으로, 시립대의 장학금에 관해 규
정하는 조례상의 시민장학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동 개
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.
- 또한 기존에 학생들에게 시민장학금항목으로 지급되던 2천만원의
사용처가 사라진 바, 해당 금액은 교내 타 장학금 등 학생들에게
직접 지원되는 예산으로 재편성되도록 해야할 것임.

- 차별 없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무료화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나,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 시립대는 세입부족분에 대해 시 지원금으로 충당해왔고 이번 입학금·전형료 무료화로 10억원이 추가 지원되면서 시립대의 자체수입금에 비해 시 지원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, 시립대가 자체수입금의 비율을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한편 시립대는 반값등록금 제도시행 시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춰 시립대 전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시킨 것과는 달리, 이번 입학금·입학전형료 폐지의 경우 시립대 학부생에게만 그 혜택이 한정되어 시립대 대학원생이나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차별이 될 수 있는 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립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임.

※ 17년 기준, 대학원생의 입학금은 18만 4,000원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8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맹진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1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11월 1일

발 의 자 : 맹진영, 김진철, 신원철,
우형찬, 송재형, 김기대,
전철수, 최호정, 신건택,
장인홍, 문형주, 유 용 의원
(12명)

1. 제안이유

서울시립대학교는 입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반값 등록금 시행에 이어 2018년부터 입학금과 전형료를 폐지하기로 함. 이에 따라 시립대의 장학금 중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금을 지원해주는 “시민장학금”이 폐지될 예정으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시민장학금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(안 제2조, 제3조,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“시장장학금·복지장학금 및 시민장학금으로”를 “시장장학금·복지장학금으로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5조제1항의 “수업료(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금을 포함한다)로”를 “수업료로” 한다.

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 (안)
제2조(장학금의 종류) 서울특별시장학금(이하 "장학금"이라 한다)은 <u>시장장학금·복지장학금 및 시민장학금</u> 으로 구분한다.	제2조(장학금의 종류) 서울특별시장학금(이하 "장학금"이라 한다)은 <u>시장장학금·복지장학금</u> 으로 구분한다.	제2조(장학금의 종류) 서울특별시장학금(이하 "장학금"이라 한다)은 <u>시장장학금·복지장학금</u> 으로 구분한다.	제2조(장학금의 종류) 서울특별시장학금(이하 "장학금"이라 한다)은 <u>시장장학금·복지장학금</u> 으로 구분한다.
제3조(지급대상) ① ~ ② (생략)	제3조(지급대상) ① ~ ② (생략)	제3조(지급대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	제3조(지급대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<u>시민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대학교의 신입생 중에서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,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졸업자(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)로 한다.</u>	③ <u>시민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대학교의 신입생 중에서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,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졸업자(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)로 한다.</u>	③ <u>시민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대학교의 신입생 중에서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,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졸업자(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)로 한다.</u>	③ <u>시민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대학교의 신입생 중에서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,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졸업자(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)로 한다.</u>
제5조(장학금의 수혜내용 등) ① <u>시장장학금과 복지장학금은 수업료(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금을 포함한다)로 한다.</u>	제5조(장학금의 수혜내용 등) ① <u>시장장학금과 복지장학금은 수업료(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금을 포함한다)로 한다.</u>	제5조(장학금의 수혜내용 등) ① <u>시장장학금과 복지장학금은 수업료</u> 로 한다.	제5조(장학금의 수혜내용 등) ① <u>시장장학금과 복지장학금은 수업료</u> 로 한다.
② <u>시민장학금은 입학금으로 한다.</u>	② <u>시민장학금은 입학금으로 한다.</u>	② <u>시민장학금은 입학금으로 한다.</u>	② <u>시민장학금은 입학금으로 한다.</u>
③ (생략)	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	③ (현행과 같음)